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지 역 사 랑 상 품 권 이 용 활 성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52호, 2020. 5.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변경 또는 발행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하는 권면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로 정하며, 국가 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공모사업, 홍보 및 현황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무부 등 합의 필요

라. 기타 : 재입법 예고(2020. 6. 8. ~ 6. 11.) 필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실적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할인·판매·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 법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연 락 처	(044) 200 - 3946